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 22.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월 16일

. 회부일자 : 1996년 1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임시회

. 제4차 내무위원회(1996. 1.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 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보사환경국 → 보건환경국
- 가정복지국 → 사회복지국
- 지역경제국 → 공업경제국
- 민방위국 → 민방위재난관리국

○ 10실.국.본부의 분장사무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창 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이와관련한 행정사무의 분장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으로는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현행 감사실의 9개의 실.국.본부 설치범위와 명칭 및 실.국.본부별 주요 사업내용과 담당관.과의 설치범위에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을 포함하여 44개 이내로한 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감사실의 9개의 실.국.본부설치 범위와 사무분장 내용 및 과.담당관 설치 범위에 있어서는

45개 과.담당관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으로서 종전의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10개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규정 내용중에 있어서도 실,국,본부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내용 또한 명칭변경에 따라 종전의 업무소관 내용을 변경된 소관업무로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급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행정기구의 조정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3. 수정안요지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제10조
공업경제국의 사무분장 내용 중
공기업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을 삭제하고
공기업에 관한 사무내용은 제5조 기획관리실소관의
사무분장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내용은 제6조 내무국 소관의
사무분장내용으로 수정 조정

7.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 8인중 8인 찬성으로
동조례안 제10조의 공업경제국 사무분장 내용을 제5조의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와 제6조의 내무국 소관 사무내용
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 조문대비표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